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1389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532,980원 및 그중 12,17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5. 21.부터, 38,115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. 3.부터 각 2022. 7. 19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백소영

별지